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4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김동아
박민규 · 윤준병 · 손 솔
문진석 · 김기표 · 조계원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
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
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

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병가·휴가 또는 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 한다)으로 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 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직원의 질병·감염병 또는 병가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방지와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하는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직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병가·휴가 또는 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 한다)으로 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u> <u>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 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u>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
직원의 질병·감염병 또는 병
가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방
지와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인력
을 확보·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
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
치하는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
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직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
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직원
의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
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

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
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